주요 내용

▌조세개혁의 주요 내용과 보완 과제▐

정책 방향: 공평과세의 실현을 통한 경제·사회적 정의 실현

- 공평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, 고소득·부유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로 중산층 및 서민 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의 주된 목표임

부문별 주요 개혁 내용

- **(금융종합과세 재도입)** 아직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현 금융 상황을 고려하여 2001년으로 연기
- **(부가가치세 전면 조정)** 부가가치세제의 단순화를 추진하되 시행 시기는 미정
- **(상속·증여세 강화)** 불법·편법 재산상속을 방지
- **(호화·사치주택 기준과 과세 강화)** 고급 주택의 거래관련 세금 강화
- **(특별소비세 전면 조정)** 일부 품목별(예: 음식료품, TV 등 일부 전자제품)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중산층 세부담 경감

평가

- **(조세 형평성)** 세금의 형평성있는 추징으로 계층간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됨
- **(세수 확보 효과)** 세율이 인상된 상속·증여세 및 일부 세목의 세수 증대 효과가 특소세수의 감소로 인해 상쇄되어 순 세수 증가는 미지수
- **(조세 원칙과의 부합성)** 증여 주식의 상장시 차익에 대한 과세 등 일부 조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조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

현안 분석

조세개혁의 주요 내용과 보완 과제

박 용 주

정책 방향: 공평과세의 실현을 통한 경제·사회 정의 실현

- **(기본 방향) 고소득·부유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로 중산층 및 서민 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의 주된 목표임**
  -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천명 이외에도 부가가치세, 상속·증여세, 특별소비세제를 바꾸고 호화·사치주택의 기준과 과세 방법의 현실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방침임

<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4대 조세개혁 방향 >

구 분	주 요 내 용
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	- 시행시기: 2001년 1월 - 시행내용: · 부부합산 금융소득 연간 4천만원 초과분 · 이자소득세 원천 징수세율 인하 (20%) - 대상자: 약 4만명
부가가치세제 개선	- 과세특례제제도의 간이과세로의 전환 · 시행시기: 추후 확정 - 간이과제도의 간소화 -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· 신용카드 매출액 세액공제 확대
상속·증여세 강화	-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상 - 비상장 주식 상장시세 차익 증여세 과세 - 대주주 주식거래 양도세 과세 강화 - 호화사치 주택 과세강화 (취득세 인상)
특별소비세 개선	- 음식료품의 특소세 폐지 - 일부 가전제품 등의 특소세 폐지

부문별 주요 개혁 내용

- **(금융종합과세 재도입) 종합과세의 실시 시기는 현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을 고려하여 2001년으로 연기**
  - 정부는 공평과세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종합과세를 조기에 도입하려 하였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2001년으로 연기하기로 함
  - 또한 현 저금리 상황에서 이자소득세율이 너무 높다는 점을 감안, 내년에는 일단 20%로 낮추기로 함

- **(부가가치세 전면 조정) 탈루소득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문제점이 노정되어 온 부가가치세제의 단순화를 추진**
  - 과세특례제도를 축소하고 간이과세제도를 단순화시켜 일반과세 대상 확대를 추진
  - 그러나 과세특례자의 조세 저항을 우려하여 실시 시기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함

- **(상속·증여세 강화) 상속세 강화는 상당한 수준의 부유층의 불법·편법 재산 상속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추진**
  - 최고세율을 45%에서 50%로 인상하고 과세 시효를 연장하여 철저한 추적 과세를 천명
  - 또한 변칙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장 주식의 상장 시세 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함

- **(호화·사치주택 기준과 과세 강화) 고급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중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 촉진**
  - 고급주택 양도시 실거래 가액 추적 과세
  - 중형 고급주택(50~73평)의 취득세를 현행 2%에서 4%로 인상
  -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표 현실화

- **(특별소비세 전면 조정) 중산층이 소비하는 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중산층 세부담 경감**

· 국민의 소비패턴 변화에 상응하여 생필품화된 품목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면제함

평가

- **(조세 형평성) 이번 세제개혁안은 형평성있는 세금 추징으로 계층간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려 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됨**
  · 이러한 조치는 현정부의 중산층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IMF체제하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누려온 중산층의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세부담을 경감해 주자는 의미
  · 일부 특소세의 폐지로 중산층의 절대적 세부담이 다소 완화되었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로 상대적인(심리적인) 세부담 완화 효과를 보일 것임
  · 그러나 그 동안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어온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 폐지의 실행 시기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어 조세 형평성 제고 효과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진함

- **(세수 확보 효과) 세율이 인상된 상속·증여세 및 일부 세목의 세수 증대 효과가 특소세수의 감소로 인해 상쇄되어 순 세수 증가는 미지수**
  · 특히 상속·증여세의 내국세수 비중이 2.3%(1998년 기준)로 미미한 반면 특소세의 비중은 7.1%여서 이번 조치만으로 볼 때는 오히려 세수 감소가 예상됨
  · 또한 상속·증여세의 경우는 조세 회피 수단이 많아 세율이 높은 만큼 세수가 확보된다고 기대하기 힘듬

- **(조세 원칙의 문제) 일부 조치들은 조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**
  · 부의 세습을 막고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장주식의 미실현 소득에까지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조세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
  · 고급주택에 대한 거래관련 과세의 강화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. 거래에 대한 취득 및 등록세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양도세와 재산세를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

(yjpark@hri.co.kr ☎ 724-4033)